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1618

제출연월일: 2020. 4. 29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정이유

가. 기존의「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위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며

나.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 등(안 제3조~제6조)

다.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 사항(안 제7조~제13조)

라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(안 제14조~제18조)

마.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(안 제19조)

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3조제2항

나.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10조제2항

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18조제3항

4. 제정 조례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 별 영 향 평 가: 개선사항 없음(여성가족과-13249호, 2020. 3. 20.)
- 라. 입법예고: 2020. 3. 26. ~ 4. 16. / 의견 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·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·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사회적경제"란 양극화 해소,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,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,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・ 연대를 바탕으로 생산, 교환,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.
 - 2. "사회적경제조직"이란 사회적경제기업,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 조직을 말한다.
 - 3. "사회적경제기업"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.
 - 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
 - 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- 다.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

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

- 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- 4. "중간지원조직"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,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, 사회적경제기업의 역 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5. "사회적경제연대조직"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.
- 6. "사회적경제 생태계"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,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참여,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·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.
- 제4조(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)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- 1.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
 - 2.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
 - 3.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의 역량을 강화할 것
 - 4.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

14 (제224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
현에 사용할 것

- 5.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 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
-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)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
 - 3. 제14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
 - 4. 사회적경제조직간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
 - 5.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
 - 6. 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

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

- 제7조(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1. 사회적경제 정책·사업의 수립 및 집행
 - 2.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
 - 3.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
 - 4.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
 - 5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 조를 따른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 - 1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원
 - 2.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, 현장활동가, 중간지원조직 대표
 - 3.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4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.
- 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- 16 (제224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
 - 4.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12조(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)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

제14조(교육훈련 지원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 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
- 2.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
- 3.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
- 4.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15조(경영지원) 구청장은 경영·법률·기술·세무·노무·회계 등 사회 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·조언 등 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6조(재정지원)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
 - 2.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
 - 3. 제18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
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 -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- 제17조(홍보 등)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 다.
 - 1.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
- 2.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제18조(우선구매 촉진 및 파로 확대 지원)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

18 (제224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
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

- 제19조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울산 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시행계획 수립 지원
 - 2. 사회적경제조직 발굴·심사 및 감독 지원
 - 3.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
 - 4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
 - 5.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
 - 6.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
 - 7.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
 - 8.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관리·운영에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각각 폐지한다.
- 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「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근거법규

□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
□ 협동조합 기본법

제10조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)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,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8조(자활기업)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,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- 2. 국유지・공유지 우선 임대
- 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- 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- 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: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○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의「울산 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 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위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3. 작성자

○ 소 속: 일자리창출실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
○ 이 름: 박정은

○ 연락처: (052)290-4462